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73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7305 판결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소1820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진서

변론 종결2022. 4. 21.

판결 선고2022. 7. 7.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소1820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2.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7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 24.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0,000원(선이자 공제한 금원은 합계 1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7. 2. 27.부터 2019. 4. 28.까지 피고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면 피고는 2,721,15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721,1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4. 4,500,000원을, 2018. 4. 10. 1,800,000원을, 2018. 9. 17. 2,700,000원을, 2018. 10. 25. 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9. 1,800,000원을, 2018. 12. 18. 9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2. 27.부터 2019. 4. 28.까지 피고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7. 2. 27.	500,000
2017. 3. 27.	3,200,000
2017. 4. 27.	200,000
2017. 5. 28.	200,000
2017. 6. 27.	200,000
2017. 7. 26.	200,000
2017. 8. 28.	200,000
2017. 9. 27.	200,000
2017. 10. 28.	200,000
2017. 11. 27.	200,000
2017. 12. 28.	200,000
2018. 1. 30.	200,000
2018. 2. 26.	200,000
2018. 3. 27.	200,000
2018. 4. 26.	200,000
2018. 5. 10.	2,000,000
2018. 5. 27.	200,000
2018. 6. 26.	200,000
2018. 7. 27.	200,000
2018. 8. 26.	200,000
2018. 9. 26.	200,000
2018. 10. 15.	3,000,000
2018. 10. 25.	200,000
2018. 11. 25.	500,000
2018. 11. 27.	200,000
2018. 12. 25.	500,000
2018. 12. 27.	200,000
2019. 1. 26.	200,000+500,000
2019. 2. 26.	200,000
2019. 2. 27.	500,000
2019. 3. 28.	200,000+500,000

2017. 2. 27.	500,000
2019. 4. 28.	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이때 후자의 '원본'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7. 1. 24. 수령한 4,5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1개월치
최고이자를 계산하면 93,750원($= 4,500,000\text{원} \times 25\% \times 1/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406,250원($= 500,000\text{원} - 93,750\text{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원금은
4,593,750원($= 5,000,000\text{원} - 406,250\text{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금 4,593,750원과 선이자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7. 2. 27.부터 2017. 9. 27.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고,
원고는 148,867원($= 200,000\text{원} - 50,104\text{원} - 1,029\text{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TABLE: 2017. 2. 27.부터 2017. 9. 27.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변제충당 내역(이미지 생략)
다) 원고는 2017. 10. 28.부터 2018. 4.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1,400,000원($= 200,000\text{원} \times 7$)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8. 4. 10. 수령한 1,8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1개월치
최고이자를 계산하면 37,500원($= 1,800,000\text{원} \times 25\% \times 1/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162,500원(= 200,000원 - 37,50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원금은 1,837,500원(= 2,000,000원 - 162,5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금 1,837,500원과 선이자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18. 5. 10.부터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변제충당하면 원고는 161,242원[= 2,000,000원 - 1,258원(= 1,837,500원 × 25% × 1/365)1) - 1,837,5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7. 200,000원, 2018. 6. 26. 200,000원, 2018. 7. 27. 200,000원, 2018. 8. 26. 200,000원, 2018. 9. 26. 200,000원, 2018. 10. 15.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2018. 9. 17. 수령한 2,7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1개월치 최고이자를 계산하면 56,250원(= 2,700,000원 × 25% × 1/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243,750원(= 300,000원 - 56,25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원금은 2,756,250원(= 3,000,000원 - 243,75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금 2,756,250원과 선이자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9. 29. 수령한 1,8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1개월치 최고이자를 계산하면 37,500원(= 1,800,000원 × 25% × 1/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162,500원(= 200,000원 - 37,50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원금은 1,837,500원(= 2,000,000원 - 162,5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금 1,837,500원과 선이자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18. 10. 29.부터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10. 25. 수령한 4,5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1개월치 최고이자를 계산하면 93,750원(= 4,500,000원 × 25% × 1/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406,250원(= 500,000원 - 93,75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원금은 4,593,750원(= 5,000,000원 - 406,25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금 4,593,750원과 선이자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18. 11. 25.부터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12. 18. 수령한 9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1개월치 최고이자를

계산하면 18,750원($= 900,000\text{원} \times 25\% \times 1/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81,250원($= 100,000\text{원} - 18,750\text{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원금은 918,750원($= 1,000,000\text{원} - 81,250\text{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원금 918,750원과 선이자 지급 기간 다음날인 2019. 1.

18.부터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10. 25.부터 2019. 4. 28.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고, 2019. 4. 28. 기준으로 원고의 잔존 차용금은 6,355,617원($= 843,117\text{원} + 4,593,750\text{원} + 918,750\text{원}$)이다.

TABLE: 2018. 10. 25.부터 2019. 4. 28.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변제충당 내역(이미지 생략)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1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2018. 8. 26.자 200,000원, 2018. 9. 26.자 200,000원, 2018. 10. 25.자 200,000원, 2018. 11. 25.자 500,000원, 2018. 11. 27.자 200,000원, 2018. 12. 25.자 500,000원, 2018. 12. 27.자 200,000원은 지급내역 자료가 없고, ② 2,300,000원($= 2018. 7. 27.자 200,000\text{원} + 2019. 1. 26.자 700,000\text{원} + 2019. 2. 26.자 700,000\text{원} + 2019. 3. 28.자 700,000\text{원}$)은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이며, ③ 2019. 4. 28.자 1,000,000원은 C로부터 원고 채무의 대납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식명령(갑 제1호증)의 내용, 고소장(갑 제6호증)과 진술조서(갑 제7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원고 측이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차용금 합계 6,355,617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합계 5,710,109원($= 148,867\text{원} + 1,400,000\text{원} + 161,242\text{원} + 4,000,000\text{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645,508원($= 6,355,617\text{원} - 5,710,109\text{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2018. 7. 원고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금 10,800,000원, 계불입금 월 6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한 사실, 피고가 2020. 1. 5.경 계원들로부터 합계 10,8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10,550,000원(밥값 250,000원 제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계금 10,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계불입금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27.부터 2019. 12. 5.까지 피고에게 계불입금으로 6,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금 10,8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 6,900,000원을 공제한 3,900,000원을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을 3,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0,550,000원에서 3,8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공제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미납 계불입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금 10,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창원지방법원 2020고약4853호), 계원인 원고의 계불입금 지급의무와 계주인 피고의 계금 지급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이므로, 피고의 계금 지급의무에 대응하여 원고에게도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6,750,000원(= 10,550,000원 - 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10. 25. 피고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뿐만 아니라 계불입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잔존 차용원리금을 계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잔존

차용원리금을 원고가 향후 지급받을 계금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원고 주장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를 민법 제492조 제1항이 규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계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위 각 채권은 늦어도 원고의 계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2020. 1. 5.경 상계적상에 있었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3. 1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계금 채권 6,750,000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원고의 계금 채권은 5,992,634원[= 6,750,000원 - 757,366원(= 645,508원 + 111,858원2)]이 남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92,6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645,508\text{원} \times 25\% \times 253\text{일}(2019. 4. 28.\text{부터 } 2020. 1. 5.\text{까지}) \div 365\text{일}.$